

의안번호	제 40 호	의결사항
의결년월일	1998. 11. 6 . (제 21 회)	

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8. 10. 26.

의안 번호	40
----------	----

제출 년월일 : '98. 10. 26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보건의료 자원의 정비, 확충,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최대만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애주기 및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년차적으로 구체적 체계적인 추진으로 보건향상을 통한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므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함

2. 주요골자

【 시행시기 : 1999년 ~ 2002년(4개년간 추진)】

가. 보건사업 추진(16개사업)

▣ 생애 주기별 보건사업

○ 영유아 보건사업

-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통해 신생아부터 유아기에 이르기 까지 건강한 유아로 성장을 유도함.

○ 학생보건사업

- 체질검사, 예방접종, 보건교육등을 통해 신체적, 정신적, 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성숙시켜 학생으로서 뿐만 아닌 건전한 지역주민으로 양성 하고자함.

○ 성인보건사업

- 성인병검진, 예방접종, 자궁경부암검진등을 통해 성인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 건강 위험인자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을 증진 시키고함.

○ 모성보건사업

- 임산부의 산전, 산후 관리로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 유도하고 모유 수유율 제고로 영유아의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높이고자함.

○ 노인보건사업

-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, 독거노인, 노인부부세대 중심으로 예방접종, 건강진단을 통한 질환자 발견. 치료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.

■ 서비스별 보건사업

○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

- 지역 주민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을 조기발견 및 치료 하고 보건교육을 통해서 음주와 흡연시 건강 위해성 지식을 함양 하므로써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와 생활태도 변화를 유도.

○ 영양개선사업

- 질병 발생의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부적절한 식 습관의 변화를 통한 질병예방과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식이요법 지도

○ 구강보건사업

- 2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을 통해 치아우식증을 감소 시키고자함.

○ 급.만성 전염병 관리사업

- 방역을 통한 전염병 발생의 철저한 예방과 보균검사 강화로 전염 원 조기 차단.

○ 의약무 관리사업

-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·불량 의약품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의료 풍토 정착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.

○ 정신보건사업

- 입원, 요양치료 중심의 폐쇄적, 격리적 방향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연계한 개방적인 지역사회중심의 예방, 치료전환.

- 재활보건의료사업(장애자, 시각, 청각, 지체, 정신박약)
 - 발견된 환자들에게 방문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후유증의 최소화와 물리치료등으로 재활능력 배양.
-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
 - 발견, 등록 환자의 정기적인 추구 관리로 증상 완화 및 합병증 예방으로 편안한 노후 생활 영위.
- 방문보건의료사업
 - 의료 취약인구(장애자, 거동불편자, 독거노인, 만성질환자, 정신질환자, 치매환자등)를 중심으로 가정간호와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형평에 맞는 의료이용 편의제공.
-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
 - 성실한 복무로 관할지역의 보건의료 사업 책임수행 임무를 부여하여 원활한 지역보건의료 추진.
- 각종 실험 및 검사
 -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결과 제시로 질병의 바른진단과 적절한 치료 지원.

나. 공공 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

○ 시설

- 보건소 이전 신축(2000년 신축 예정)

☞ 시에서 대지 확보 및 위치 결정 우선 조치 ☜

- 소요 대지면적 : 1,000평
- 연 건평 : 486평(3층)
- 소요 예산 : 1,700 백만원(재원 : 농특자금, 증액교부금)

○ 의료장비 확충(4개년간 추진)

- 보건소

- 장 비 명 : 현미경외 35종
- 소요 예산액 : 100 백만원(국비)

- 보건지소(6개소)

- 장 비 명 : 청진기외 97종
- 소요 예산액 : 80 백만원(국비)

- 보건진료소(11개소)

- 장 비 명 : 고압멸균기외 89종
- 소요 예산액 : 55 백만원(국비)

다.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연계성 구축

- 민간의료기관은 진료전담,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, 전염병예방 및 진료, 재활, 방문보건의료, 만성질환자관리, 노인보건, 의료 취약인구의 보건의료와 보건교육등 기능분담 역할 수행 토록 함.

3. 법적 근거

-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